

쟁점(I): 지구적 정의와 인권

인권보호는 국제사회의 의무와 권리

장 원 석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권의 세계화현상이 진행되면서 급기야 주권침해 논쟁이 야기되고 있다. 인권의 세계화는 결국 주권국가에 대한 제3자의 인도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기서 인도적 개입의 내용을 군사적 개입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제재나 외교적 압력을 망라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상정한다. 1999년 나토(NATO)가 코소보 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국제관계 패러다임의 혁명적인 변화로 해석하였다. 노스 웨스턴 대학의 법학 교수인 스테픈 프레스(Stephen Presser)는 국제법의 새로운 원칙이 출현하여 주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로의 진입을 목격하는 중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반면 국제인권감시 기구인 휴먼 라이트 와치(Human Right Watch)의 책임자인 케네스 로스(Kenneth Roth)는 뉴욕 타임스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1999년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가 이루어진 국가의 주권이 더 이상 존중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의 대통령이었던 하벨(Havel) 역시 코소보는 국익이 아니라 원칙과 가치의 이름으로 수행된 최초의

전쟁이며 미래에 인권이 주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하였다. 피치자 중심의 주권론에 착안하여 주권을 국민의 권리로 파악하는 경우 인도주의적 개입은 주권의 침해가 아니라 주권의 실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로서 통치자와 정부 역시 주권의 상징이며 따라서 양자의 긴장관계는 불가피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 주제를 놓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한 적이 없지만 사회과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인도주의적 개입을 지지하는 범용한 견해를 피력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무조건적인 주장이 아니며 몇 가지 전제를 수반한다.

우선 인권과 주권의 개념이 각각 진보와 보수의 논리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양자의 긴장관계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는 결코 정의와 불의의 대결로서 일반화될 수 없다. 가령 주권의 개념은 대내적인 지배와 강제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독립과 자결, 국가적 평등의 이념을 내포한다. 또한 주권의 대행자로서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생존권을 책임질 경우 진보의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권과 주권의 개념은 진보와 보수의 이데올로기와 일대일 상관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양자는 여러 가지 상황의 논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흑백논리를 주장할 경우 자신이 규정한 뜻에 스스로 걸려들 가능성이 있다. 진보적 차원에서 인권의 우위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제국주의적 외세에 대항하는 제3세계 국가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보수의 논리로 역전될 수 있고, 제3세계 국가의 반제국주의를 옹호하다 보면 압제정권에 침묵하는 모순적 상황과 직면하게 된다. 인권과 주권의 선택이 구체적 상황의 논리에 의해서 의의를 부여받게 된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논쟁은 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전개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인권의 세계화 과정을 간단히 고찰해보자. 인권의 개념이 자연권 혹은 생득적 권리로 인식된 것은 사회계약론의 완성과 더불어서이다. 그러나 동일한 시기에 주권의 개념 역시 신성한 가치로 정립됨으로써 인권은 시민권적 양상을 띠게 되었다. 칸트의 이론이 보여주듯이 세계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공화적 체제를 전제로 할 때만 실현될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면서 나치의 만행에 침묵했던 서구사회는 죄의식과 이상주의적 에토스 속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고 제노사이드 협약을 체결하였다. 냉전의 시기에 소비에트 블록에 가해진 서구사회의 인권 공세 역시 인권의 세계화에 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행동방식은 혁명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여 주권국가의 내부에서 발생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기에 이르렀다. 밀로세비치(Milosevic)나 피노체트(Pinochet)를 법정에 세웠으며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이 모색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탈영토화의 경향은 주권국가의 권위를 약화시켰으며 국경을 초월한 민간단체의 연대는 국가주권의 논리를 약화시키는 환경적 요인이 되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이념을 공동체적 가치로 수용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경우 극우 정당을 포용하는 오스트리아의 연정구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2005년 1월 20일 부시 미대통령은 대통령 2기 취임사를 통해서 미국은 자유의 수호자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외면하는 모든 독재정권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였다. 2005년 3월 미국의 상원과 하원은 전세계 독재국가들을 민주화시키기 위한 '민주주의증진법'을 의회에 상정하였다. '민주주의증진법'의 핵심내용은 미국무부와

재외공관들이 민주주의 확산의 전초기지가 되어 비민주국가들의 민주화에 적극 개입하자는 것이다. 폭정의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북한·이란·쿠바·미얀마·벨로루시·짐바브웨 등의 국가를 주로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사의 현실적 추세를 어떻게 규범적으로 정당화 할 것인가? 필자가 취하는 논리는 두 가지 전제에 입각해 있다. 첫째는 계약론적 국가관이다. 즉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 역할에 있으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로크의 이중주권론(double sovereignty theory)과 같은 맥락이다. 주권의 사수는 그것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수반할 경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둘째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주장이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진화를 거듭해 왔으며 현재에는 사회권뿐만 아니라 환경권까지를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개입의 경우 인권의 개념은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서 보편적 가치로서 인정될 수 있는 최소의 수준에서 그 내용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 경우 인권의 침해라 함은 대량학살이나 전체주의적 지배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문화적 차이에 기인하는 경미한 사안은 인도주의적 개입의 명분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양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자에 대해서도 개입이 시도될 수 있으나 그것은 가능한 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인권의 개념을 미국식 개인주의에 입각하여 파악한다면 비서구 사회는 대부분 비정상적이고 후진적인 사회로 간주될 수 있으며 모두가 최소한 경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식 개인주의가 보편적 가치라

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인권의 개념 역시 보다 핵심적인 내용으로 압축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가 아시아적 민주주의를 주장한다고 하여 경제적 제재를 시도하거나 외교적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처사일 것이다. 인권의 보편성은 문화와 종교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전인류적 가치를 의미한다.

주권론을 옹호하는 논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뉘어 진다. 하나는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원칙론적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부적절한 개입이나 효과적이지 못한 개입을 우려하는 방법론적 견해이다. 필자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옹호하기 위해서 전자에 대해서는 반대의 논리를 주장하며 후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첫 번째 범주의 반론은 주권론의 본질적인 옹호이다. 이 경우 주권론은 문화적 상대주의의 논리에 입각하여 인권의 침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인권의 침해여부 판단은 해당국가의 고유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 질 것이며 제3자가 관여할 문제라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필자의 반론은 문화적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지만 인권의 본질적 침해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격적인 주권론의 옹호는 주권국가 내부에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코 외부적인 개입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서 주권은 인권의 전제이며 주권 없이 인권도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주권을 상실함으로써 사실상 인권을 박탈당했던 제3세계의 역사적 경험을 생각할 때 이러한 주장은 이해해줄만한

구석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도주의적 개입은 과거의 제국주의와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며 이러한 논리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비민주적인 체제나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그것은 형식논리에 불과하게 된다. 주권론이 보다 극단화되면 다음과 같은 논리도 주장될 수 있다. 즉 소수의 희생을 통해 체제가 보전됨으로써 다수 인민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은 일반 국민이 정부의 인권탄압을 과연 용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공권력의 강요에 의한 침묵이라면 주권의 논리는 애당초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며, 설령 다수 국민이 소수 집단에 대한 인권침해를 용납한다 하더라도 체제외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사이비 종교집단과 다를 바 없는 왜곡된 의식으로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인도주의적 개입을 반대하는 두 번째 논리는 강대국의 자의적 행동에 대한 우려이다. 누가 개입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며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러한 논리는 상당부분 미국의 군사력 남용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되는데 제국주의의 지배나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는 제3세계의 일반적인 반응이기도 하다. 그들은 미국이 과거 아시아와 아프리카 혹은 중남미 지역에서 보여준 이중적 태도와 부적절한 의도를 문제 삼으며 군함외교의 가능성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역설적으로 정당한 절차와 주체가 인정될 경우 인도주의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개입을 반대하는 또 다른 논리는 개입이 초래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문제이다. 무력에 의한 개입의 경우 군사적 표적과 민간의 표적 구분이 힘들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정권은 인간방패의 간교한 전술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고한 시민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군사적 공격뿐만 아니라 경제적 제재 역시 민중적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라크 전쟁이나 코소보사태에서 확인됐듯이 식량과 에너지 부족, 의료와 보건 상황의 급격한 악화, 치안의 부재 등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며 다수의 민중에게 해방의 기쁨보다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이 우선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개입의 방식이 보다 신중히 선택되어야 하며 비례성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하고 다각도로 보완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을 일깨워주지만 불의를 외면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상대국가의 내부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입이 자제되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도 간혹 주장되지만 정보화 사회의 진전 등을 지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의 세계를 감안할 때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본다.

필자의 입장은 결국 최소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개입에 따른 주권의 침해가 불가피 하며 정당한 절차와 주체가 보장된다면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대부분의 반론이 어느 정도 불식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오히려 현실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국제사회의 일관성 있는 개입이 일련의 학습효과를 통하여 주권침해를 최소화하거나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전통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최선의 전략은 진정한 대표성을 갖는 국제기구로서 유엔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인도주의적 개입을 모색하는 것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에 동의한다.

- 1) 국제사회는 대규모적 인권침해에 대해서 설령 그것이 주권침해를 초래한다 할지라도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 2) 인도주의적 개입을 위해서 유엔의 승인이 필수적이지만 긴급사태의 경우 사후적인 승인도 가능하다. 단 유엔이 중지를 명할 경우 즉각적으로 이를 실행해야 한다.
- 3) 대규모적 인권침해사태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의 책임은 유엔이 진다. 모든 국가들은 사실 확인을 위한 유엔의 임무수행에 협조해야 한다.
- 4) 군사력 동원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비례성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한다.
- 5) 모든 의사결정은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킨다는 근본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6) 인도주의적 개입의 주체는 사태를 수습한 후 해당지역의 재건과 자립의 특별한 책임을 진다.
- 7) 유엔의 개입의 소기의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충분한 자원과 무력을 제공해야 한다. 유엔이 여타의 주체나 다국적 군대에게 책임을 이관할 경우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족이지만 양날의 칼을 갖는 주제를 다루는 경우 흔히 발견되는 논리적 일관성의 결여 문제를 언급하고 싶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인권의 문제를 앞세워 숙연한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북한이나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해서 일언반구 하지 않는가 하면, 반대로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제3세계의 주권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시아적 민주주의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좀처럼 보기 힘들다. 승산있는 논쟁에

서 큰 목소리를 내고 당혹스러운 주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